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 11. 13 선고 2023가단1006 판결 [보증채무금]

---

## 전 문

원고A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지원

담당변호사 최정필

변론 종결 2024. 10. 16.

판결 선고 2024. 11. 1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00,207원 및 그 중 24,307,252원에 대하여 2023.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차용증서의 하단에 날인된 무인과 피고의 우수지문이 일치하는 점은 감정인 C의 무인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차용증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증거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갑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D는 2020. 7. 22.경 원고에게 '차용금 60,000,000원, 변제기 2021. 7. 21., 이율 월 2%'로 기재된 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② 이 사건 차용증서에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서명 옆에 피고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선이자 3,000,000원, 경비 1,000,000원을 공제한 후 D에게 2020. 7. 22. 10,000,000원, 2020. 7. 27. 46,000,000원 합계 56,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1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이에 관한 D의 채무를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고 한다), 피고는 D의 제1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금으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경개 또는 무효합의 주장에 대판 판단

피고는, 원고와 D가 2021. 3. 18.경 위 제1항의 대여금과 추가 대여금을 합하여 원금 100,000,000원, 변제기 2022. 3. 18., 이율 월 2.5%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경개 또는 제1금전소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는 합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21. 3. 18.경 남아있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와 그 후 추가로 발생한 대여금채무를 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2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D가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0원, 변제기 2022. 3. 18., 이율 월 2.5%'로 기재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는 제2금전소비대차계약상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2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 및 채무자가 동일한 점, 채권의 목적도 대여금으로 동일한 점,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을 면제해 줄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제2금전소비대차계약이 경계계약이라거나, 제1금전소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는 합의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변제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선이자 공제액 4,000,000원 및 D의 변제로 인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 가. 선이자 공제액에 따른 대여원금의 확정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이자제한법 제3조).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동법 제4조).

원고는 제1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D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00,000원(1개월분 이자, 월 5%), 경비 1,000,000원을 공제하고 56,0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를 위 법률 규정에 비추어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이 대여원금을 확정할 수 있다[이자 계산을 위한 대여일은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된 2020. 7. 22.로 함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의 2024. 7. 3.자 변제충당 부분 참조)].

|             |             |            |             |                                                                                                                                                           |
|-------------|-------------|------------|-------------|-----------------------------------------------------------------------------------------------------------------------------------------------------------|
| 60,000,000원 | 2020.07.22. | 4,000,000원 | 2020.08.21. | 57,141,479원 <sup>1)</sup> 57,161,479원 = (60,000,000원 ~ 4,000,000원) + [(60,000,000원 ~ 4,000,000원) × 0.24 × 31/365](원고와 피고는 약정이율 월 2%를 연 24%로 계산하는데 동의하였다.) |
|-------------|-------------|------------|-------------|-----------------------------------------------------------------------------------------------------------------------------------------------------------|

#### 나. D의 변제금과 변제충당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별지1 추가 대여금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D에게 추가로 금전을 대여한 사실, ② D가 원고에게 지급한 변제금은 별지2 총당액 계산표 중 변제일 및 변제액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77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한다.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별지1 추가 대여금표 기재 각 대여금채무보다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였거나, 약정이율이 월 2%로 그 변제이익이 별지1 추가 대여금표 기재 각 대여금채무의 변제이익보다 많으므로(원고는 위 각 추가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 약정이율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D가 제2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변제금은 모두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변제충당된다. 나아가 D가 제2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이후로 지급한 2021. 10. 12.자 변제금 1,000,000원 및 2022. 11. 10.자 변제금 5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변제충당하는 것에 원고와 피고도 다투지 않으므로(제4회 변론조서 참조), D가 원고에게 지급한 변제금 전액은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변제충당된다.

변제충당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79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하고, 지연손해금도 이자와 마찬가지로 원본보다 먼저 충당되어야 하는바, 이를 계산하면 별지2 총당액 계산표와 같게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의 변제금이 제1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가 아닌 추가 대여금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다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달리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합의가 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변제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금으로 33,100,207원 및 그 중 24,307,252원에 대하여 D의

마지막 변제금 지급일 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3.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이내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최고검색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단순 보증인이라는 전제에서 최고검색의 항변을 하나,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장진영**

별지

1)  $57,161,479\text{원} = (60,000,000\text{원} \sim 4,000,000\text{원}) + [(60,000,000\text{원} \sim 4,000,000\text{원}) \times 0.24 \times 31/365]$ (원고와 피고는 약정이율 월 2%를 연 24%로 계산하는데 동의하였다.)